

안양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04. 4. 28 규칙 제1163호
일부개정 2015. 12. 18 규칙 제1438호(안양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
일괄정비 규칙)
일부개정 2020. 1. 31 규칙 제1554호(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
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, 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안양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 1. 31>

제2조(강사) ① 「안양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양시 예절교육관(이하 “예절관”이라 한다) 강사는 수석강사 1인, 책임강사 3인, 관리강사 1인으로 한다. 다만, 교육과목 개설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. 31>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조(위탁관리)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예절관의 전문적 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절교육기관에 강사 및 교재 개발에 관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, 위탁기간, 위탁조건, 관리책임, 기타 교육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2년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.

제4조(교육비용)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

1. 관외 거주 교육수강자
2. 관외 기관·단체 주관의 외국인 교육수강자
3. 성인 심화2·3단계, 다례교육 프로그램 수강자
4. 전통혼인례, 관·계례(성년례) 신청자
5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는 별표와 같다.

제5조(명예예절강사 위촉) ① 시장은 전통예절 보급 및 청소년 예절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명예예절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.

1. 예절교육 수강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
2. 예절교육관 교육과정(139시간)을 수료한 자
3. 예절관련 자원봉사에 100시간 이상 참여한 자
4. 시험평가 70점 이상을 받은 자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예절강사는 각급 학교 청소년 예절교육 자원봉사를 담당하며,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명예예절강사 관리) ① 시장은 명예예절강사의 예절관련 자원봉사 활동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명예예절강사의 예절관련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를 위해 교육지원 및 강의 평가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.

부칙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위촉된 명예예절강사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15. 12. 18 규칙 제1438호 안양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1. 31 규칙 제1554호, 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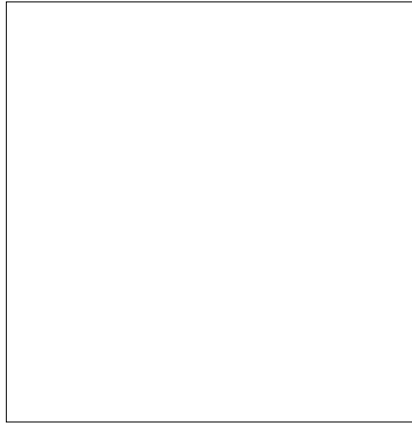
예절관 교육수강료

대 상 자	수 강 료	비 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외 기관·단체 주관의 외국인 수강자 	10,000원	재료비 별 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심화 2단계 프로그램 수강자 	20,000원	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심화 3단계 프로그램 수강자 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다례반 프로그램 수강자 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성인일반, 심화1단계 수강자 중 관외 거주자 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, 계례 신청자 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성인심화 2단계 수강자 중 관외 거주자 	50,000원	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통 혼인례 신청자 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성인심화 3단계 수강자 중 관외 거주자 	100,000원	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다례반 수강자 중 관외 거주자 		

안양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

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15. 12. 18>

명예예절강사 기록카드



안양시 예절교육관

[2면] 명예예절강사 활동 기록카드

사진	성명				생년월일						
	본적				전화번호			E-mail			
	주소				핸드폰번호			직업			
시강평가일시		년 월 일 <평가주제: >			명예예절강사 위 추		년 월 일				
가족사항	관계	성명	생년월일	학력	직업	관계	성명	생년월일	학력	직업	
학력	기간		학교명 및 전공학과		학위	기간		학교명 및 전공학과		학위	
	부터	까지				부터	까지				
경력	기간		근 무 처		직위	기간		근 무 처		직위	
	부터	까지				부터	까지				
자격증	자격증		취득일	발급처		자격증		취득일	발급처		
단체활동	단체명	직책	가입연월일	탈퇴연월일	단체명	직책	가입연월일	탈퇴연월일			

